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| 노동 뉴스레터



■ 최신 판례 ■

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

[대상판결: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권영환 변호사

은행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4개월 만에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그로부터 17일 뒤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.

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"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 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 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 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"는 주장을 하였습니다.

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, "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"고 판결하였습니다.

■ 다운로드: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